

신도리코 인권경영 정책

1. 총칙

1) 인권헌장 제정 목적

신도리코는 기업 경영 전반에 인권경영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인권헌장을 제정·선언한다.

신도리코는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책임 있는 기업행동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및 노동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이를 지지한다.

신도리코는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한다.

2) 인권헌장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은 신도리코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임원, 직원, 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생산법인과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신도리코의 임직원은 협력사, 판매 및 서비스 조직과의 관계에서도 본 인권헌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나아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를 권장한다.

본 인권헌장의 내용이 해당 국가의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신도리코는 각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제

정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령,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도리코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 원칙

제 1 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신도리코는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연소자 고용 시에는 근로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강압을 통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신분증, 여권, 사증 등 개인 신분증명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제 2 조 차별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도리코는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여부, 연령, 혼인 또는 임신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 고용 전반에 있어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업무지시, 폭언, 기타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제 3 조 근로조건 준수

신도리코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수수료, 알선비, 기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 수행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제 4 조 인도적 대우

신도리코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학대, 모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

신도리코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련 법규를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기회를 보장한다.

제 6 조 산업안전 보장

신도리코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시설, 설비, 장비 및 도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 7 조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신도리코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및 거주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 이주근로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8 조 고객 인권 보호

신도리코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활동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 9 조 환경권 보장

신도리코는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요소임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과 실행 방침을 수립·운영한다.

3. 시스템 구축

1) 고충처리 절차 운영

①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신도리코는 인권침해를 경험하였거나 인권 리스크를 인지한 임직원 및 기타 개인 또는 단체(이하 '신고인')가 현지 언어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 시, 개별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주관 부서 등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한다.

②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신도리코는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 관계 행정기관의 지침, 내부 처리 관행 및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적의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사례가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명성 및 평판에 중대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회의체에서 구제방안을 심의한다.

신고채널 : 신도리코 윤리경영상담센터(ethics.sindoh.com)

③ 신고인 보호

신도리코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신원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및 피해내용, 구제 절차, 처리 결과 등 모든 신고 관련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 리스크를 신고한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부록

담당자

인력개발실 인사팀 이윤태 매니저

1)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인권 관련 조항과,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본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 ①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②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 (2010)
- ③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④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 ⑤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 ⑥ 대한민국 헌법
- ⑦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18)
- ⑧ 국가인권위원회, 기관(기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18)
- ⑨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